

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5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5월 12일

3. 제안 이유
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·시행에 따라 농지개량계 조직 운영을 정하는 현행 조례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 골자

○ 조례제명 변경

-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⇒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

○ 일부내용 변경

- 농지개량계 ⇒ 수리계

-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 내용 삭제

5. 검토 의견

-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규정하였으나
-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농지개량조합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이의 대체법령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
- 조례의 내용중 대체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